- 1 관련: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 제5항 및 제6항
- □ 제11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 ① 학사학위논문은 졸업 희망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하며야 한다. 다만,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[개정 2018. 8. 13.]
  -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,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.
  - ③ 제2함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  - ®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·출산 기간(임신·출산의 경우 1회당 2년)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8. 8. 13., 2019. 4. 10.]
  - ⑤ 제2할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(원)장미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익를 거쳐 1회에 한하며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야 한다. ⑥ 제5할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며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미상, 박사과정은 9학점 미상 취득하되,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미상 교과목을 수강하며야 한다.
    - 2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- 가) 대상자:

논문제출기한(수료 후 석사 4년+2년, 박사 6년+2년)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

- 나) 처리 절차:
  - ① 신청서 접수
  - ② 각 대학(원)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(승인여부 결정)
  - ③ 승인자 명단 제출(교무과)
- 다) 제출 서류(붙임1):
  - ①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
  - ② 확인서
  - ③ 사유서
  - ★ 제출 기한: 2021. 7. 20.(화) 오전까지
- 라) 과정 이수 방법
  - ① 등록횟수: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,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<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>
    - \*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
  - ② 교과목 이수: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,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<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>
    - \* 교과목은 학과(부)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
    - \*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. 다만,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
  - ③ 논문제출자격시험: 기 합격 사항 인정,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
  - ④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: 해당기관(학사과, 재무과)에서 공지하는 기간
  - ⑤ 등록 절차 및 장소: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
- 3 2012. 3. 1.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[붙임2]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제출 기한 동일)